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행정제재가중처분기준명확화를
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시행령 등
2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한정애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를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제재 가중처분 위반행위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고, 위반행위의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행정제재 가중처분을 이해하기 쉽고 단순·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협의 전

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를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
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

제1조(「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」의 개정)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비고 전단 중 “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”을 “최근”으
로 하고, 같은 비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받은 날과 그 조
치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별표 4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
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2조(「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
개정) 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
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
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	
연 락 처	(042) 481 - 7299